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660

발의연월일: 2022. 2. 4.

발 의 자:김승원·김용민·도종환

민형배・박 정・서삼석

양이원영 · 유정주 · 최강욱

한병도 · 홍정민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단체 로서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별로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 지역별 관광협회가 운영되고 있음.

지방분권의 강화 추세 속에 관광 정책 역시 과거 중앙집권형 정책에서 지역주도형 관광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관광사업 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단체로서 지역별 관광협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지역별 관광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도지사가 지역별 관광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적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5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제45조(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별 관
	광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
	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